

전자채권결제제도 기본약관 개정대비표

1. 주요 개정내용

현 행	개 정	비고
<p>전자채권결제제도 기본약관</p> <p>제 1 조 (적용범위) ~ 제 6 조 (이용시간) (기재생략)</p> <p>제 7 조(수수료) ① (기재생략) ② 은행이 제 1 항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, 그 내용을 본점 및 영업점, 게시 가능하거나 기타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변경일 1개월 전에 게시하여 1개월간 알린다. ③ (기재생략)</p> <p>제 8 조 (전자채권의 발행 및 용도) ① 구매기업은 전자채권을 정상적인 상거래에 근거한 구매대금 결제용도로만 발행할 수 있다. ②~⑤ (기재생략)</p> <p>제 9 조 (전자채권의 발행절차) ~ 제 22 조 (준거법) (기재생략)</p>	<p>전자채권결제제도 기본약관</p> <p>제 1 조 (적용범위) ~ 제 6 조 (이용시간)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 7 조(수수료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은행이 제 1 항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, 「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」, 약관의 변경 조항을 준용한다. ③ (삭제)</p> <p>제 8 조 (전자채권의 발행 및 용도) ① 구매기업은 전자채권을 정상적인 상거래에 근거한 구매대금 결제용도로만 발행할 수 있으며, 만기를 90 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2020.5.29.까지는 150 일 이내, 2021.5.29.까지는 120 일 이내로 하여 발행할 수 있다. ②~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 9 조 (전자채권의 발행절차) ~ 제 22 조 (준거법) (현행과 같음)</p>	<p>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준용</p> <p>단계적 만기 단축</p>

2. 개정 시행일 : 2019년 5월 30일

3. 기 거래고객에 대한 적용 : 적용